

부속서 II 주해

1. 이 부속서의 당사국의 유보목록은 제7.6조(비합치 조치 –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및 제11.12조(비합치 조치 – 투자)에 따라, 그 당사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.
 - 가. 제7.2조(내국민 대우 –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또는 제11.3조(내국민 대우 – 투자)
 - 나. 제7.3조(최혜국 대우 – 국경 간 서비스무역) 또는 제11.4조(최혜국 대우 – 투자)
 - 다. 제7.4조(시장접근 – 국경 간 서비스무역)
 - 라. 제7.5조(현지주재 – 국경 간 서비스무역)
 - 마. 제11.9조(이행요건 – 투자), 또는
 - 바. 제11.10조(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– 투자)
2.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.
 - 가. **분야**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.
 - 나. **관련의무**는 제7.6조제2항 및 제11.12조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(들)을 명시한다.
 - 다. **유보내용**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. 그리고
 - 라. **기존의 조치**는, 투명성의 목적상,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·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.
3. 제7.6조제2항 및 제11.12조제2항에 따라, 유보항목의 **관련의무**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**유보내용** 요소에 적시된 분야·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4. 한국의 경우, “외국인” 이란 외국 국민 또는 다른 나라의 법에 따라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.